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3. . .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제정이유

○ 당직수당지급에 관하여 종전 예산편성지침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수당지급근거를 신설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○ 당직 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신설 (안 제7조 제4항)

※ 수당지급 기준액은 규칙으로 정함

○ 조례의 시행일을 2004년 1월 1일 부터로 함 (부칙)

3. 개정(안)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참고자료

○ 입법예고

· 예고기간 : 2003. 12. 12 ~ 12. 16 (5일간)

· 예고방법 : 성주군공보, 군청 및 읍·면 게시판 게시, 군 홈페이지 게재

·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○ 참고자료 : 붙임

· 관련법령

-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7조
- 지방자체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(P75)

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
제7조(당직근무 및 비상근무)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, 도난, 그 외 사고적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, 숙직, 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며,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	제7조(당직근무 및 비상근무) ① ~ ③(현행과 같음)
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·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	
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,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.	
〈신설〉	④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.
④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.	⑤(현행과 같음).

참 고 자 료

□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

제7조(당직근무 및 비상근무)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, 도난 그 외 사고적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·숙직·방호원,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며,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·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,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.

④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.

□ 성주군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

제4조(당직의 구분) ①당직(재택 당직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.(2002. 1.9 개정)

②일직은 공휴일에 두며, 그 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.

③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자 또는 일직근무자가 개실될 때까지로 한다.

제6조(당직근무자의 편성) ④다음 각호의 사항이 설치 및 보완되었을 시는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 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.(2002. 1.9 신설)

1.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
2.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 통화전환조치
3.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(단, 일정시간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)

□ 지방자체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

일·숙직 수당 기준액은 자치단체가 당직시설상태, 당직근무인력,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를 산정하여 **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**(P75)